

2. 전형별 지원 자격

구분	인원	지원 자격
일반 전형	189	○ 지원자격의 '1. 공통사항'항을 충족한자
지역 우수자 전형	11	○ 과천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로 일반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 (단, 전편입자의 경우 2018년 2월 28일 이전에 과천시 소재 중학교로 전편입한 자에 한함)
사회 통합 전형	50	<p>○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사실이 없는 자</p> <p>○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</p> <p><b>가. 1순위(기회균등 대상자)</b></p> <p>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</p> <p>②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</p> <p>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</p> <p>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)</p> <p>⑤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</p> <p>⑥ 학교장 추천 학생</p> <p>※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, 기준 중위 소득 50%이하 가구(차상위계층),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·추천한 자</p> <p>※ '학교장추천위원회'구성원의 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,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</p> <p>※ ⑥번 학교장 추천 학생만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심의</p> <p><b>[선정예시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</li> <li>-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</li> <li>- 부양 의무자가 질병·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</li> </ul> <p><b>[객관적 증빙서류 예시]</b></p> <p>실직급여수급증 사본, 채권압류통지서,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, 폐업확인서,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, 급여명세서, 재산세납입증명서 등</p> <p>→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,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</p> <p>(부적정 예시 : 폐업확인서만으로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 → 객관적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)</p> <p><b>나. 2순위(사회다양성 대상자)</b></p> <p>※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<u>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</u>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① 소년·소녀가장(형제·자매 포함)</p> <p>② 조손가정 학생</p>

		<p>③ 북한이탈주민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해당자)</p> <p>④ 순직군경 자녀, 순직소방대원 자녀, 순직교원 자녀</p> <p>⑤ 다문화가정 자녀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해당자)</p> <p>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)</p> <p><b>다. 3순위(사회다양성 대상자)</b></p> <p>※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<u>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(1학년 3월 입학일 부터 원서제출일 현재까지)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(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)</p> <p>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(첫째 자녀부터 가능)</p> <p>③ 준사관/부사관 자녀</p> <p>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(2018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제출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)</p> <p>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</p> <p>⑥ 한부모 자녀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제1호~5호 해당자)</p> <p>⑦ 장애인의 자녀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 “장애등급판정기준”에 해당하는 자(부 또는 모)의 자녀)</p> <p>⑧ 경찰(경사 이하) / 소방공무원 (소방장 이하) / 교정공무원(교위 이하)의 자녀</p> <p>⑨ 환경미화원 / 우편집배원의 자녀</p>
<p>특례입학 대상자 전형</p>	<p>(5)</p>	<p>○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③항 해당자</p> <p>1.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</p> <p>2.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</p> <p>가.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(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)</p> <p>나.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</p> <p>다. 외국인 학생(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)</p> <p>3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</p> <p>4. 제97조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</p> <p>※ 특례입학대상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, 학교별 모집 정원의 2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. (단, 제1호, 제4호 대상자는 정원 내로 선발함)</p>
<p>국가 유공자 자녀</p>	<p>(6)</p>	<p>○ 해당 보훈(지)청으로부터 ‘교육지원대상자’로 확인을 받은 자</p>

※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특례입학 대상자가 아닌 일반귀국자는 국내 중학교의 2학년, 3학년 영어성적이 한 학기도 없다면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.